

컴퓨터 동작장애와 업무방해



申瑛澈 (법제처 법제연구원)

정보화사회에서 컴퓨터의 역할

우리는 매일같이 바쁜생활, 그리고 짝짜인 일정에 살고있다.

은행에 가서 시급히 예금을 인출하거나 거래상황을 조회하고자 카드를 넣었으나 컴퓨터고장으로 작동이 정지되어 30분내 지 1시간정도 기다려 본 경험을 누구나 겪었을 것이다.

이 경우 불편은 말할 필요없고 거래당사자간의 약속시간, 대금결제등 신용상 큰 문제는 당사자간의 범위를 벗어나 연쇄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정보화와 신용사회에서 커다란 암적존재로 나타나게 된다.

컴퓨터의 작동을 정지시키거나 부정한 작동을 하도록 하였을 때, 컴퓨터시스템에 의존하여 정보를 처리·전송하는 각종 업무는 정지되고 커다란 손실을 보게된다.

동작 장애행위의 유형

이러한 반 사회적인 불법행위, 즉 “컴퓨터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보화사회에서 필요하고 긴박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이론적으로 외국의 입법례(일본 형법 234조의 2)에서 컴퓨터의 동작이라 함은 무엇인가.

이것은 컴퓨터가 정보처리 기계로서 가지고 있는 기능, 즉 산술연산·논리연산 그밖에 정보처리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같은 동작에 장애를 주는 행위의 유형은 어떤것들이 있는가.

이것은 획일적으로 구체화할 수 없다.

형법이론중 종래의 전통적인 개념은 행위를 구체화하여 고의성을 포착하여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지만,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첨단기계와 관련된 컴퓨터범죄는 불법행위를 구체화·유형화할 수 없고, 따라서 고의성을 포착한다는 것도 어렵다.

예컨대, 컴퓨터실에 전원스위치를 끈채 상당기간 방치하였을 경우, 이것을 컴퓨터의 동작에 장애를 주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인가, 아니면 어떤 실수인가를 판별하여 입증하기는 어렵다.

또한 컴퓨터실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제대로 조절을 하지 않아 온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동작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작위·중대과실의 경우

따라서 컴퓨터의 동작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적극적·물리적 행위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파괴하거나 부정지령(프로그램·데이터등)을 입력하였을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소극적으로 또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부작위) 인하여 결과적으로 컴퓨터동작에 「장애를 일으켰을 때」에는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밖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로 컴퓨터실의 운영을 총책임지고 있는 요원이 컴퓨터 작동에 필요한 요소, 예컨대 열쇠, 스위치작동암호, 기타 관련데이터 프로그램보관함의 암호나 열쇠등을 소지한채 상당기간 행

컴퓨터의 동작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그것이 고의든 중대한 과실이든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법에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방블명되거나 결근할 경우 전산실의 업무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물론 이러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보조자가 있게 마련이지만...) 또한 전산실요원이 전원 파업하거나 태업으로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전국에 네트워크가 깔려 전국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데이터뱅크 기능이 중단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우리나라에서도 00연구원의 전산 및 연구요원이 파업하여 형법상 업무방해행위로 다룬일이 있었음)

위와 같은 행위들이 고의든 중대한 과실이든, 다른 업종의 경우 통념상 인정되는 파업이나 태업이라하여도,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법에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며, 이 또한 컴퓨터범죄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일반범죄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근로현장에서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을 하였다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입법례 검토

컴퓨터 범죄 예방을 위하여 주요 국가의 입법례로는 미국의 경우 연방형법전을 추가 신설하여 1984년 10월에 「위조엑세스 및 컴퓨터사기 남용법」을 제정하였고, 정보의 부정이용, 컴퓨터 사용방해등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서독의 경우는 1987년 3월에 형법전을 개정하여 컴퓨터사기죄(270조)를 추가하였고, 타인이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에 부정조작등으로 접근하여 컴퓨터 업무처리에 지

장을 주었을 때 처벌하도록 하였다.(263조의 2)

일본은 1987년 5월에 형법을 개정하여 컴퓨터사기죄, 문서변조죄, 업무방해죄 등을 보완, 신설하는 등 컴퓨터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제도를 체계화하였다. 「정보처리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알기쉽게 풀어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일본형법 제234조의 2)

첫째, 행위의 대상으로 사람의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전자계산기(컴퓨터), 또는 전자적기록물(디스켓, 테이프 등)에 대하여

둘째, 행위의 유형으로 이들을 ① 손괴하거나 ②허위의 정보 ③부정한 지령(프로그램등) ④기타의 방법

셋째, 행위의 결과로 전자계산기를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동작을 하도록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5년이하 징역, 2,000엔 이하 벌금)

일본의 입법례 해설

앞에서 첫째의 사람의 업무처리에 쓰이는 컴퓨터 또는 전자적기록물이라 함은,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등이 모두 해당되며, 업무의 처리는 정신적(지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모든 업무 또는 사업을 다 의미한다. 다만 주의를 요하는 것은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전자 자동판매기」의 부정사용을 엄밀한 의미로 컴퓨터(정보처리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배제된다.

둘째의 컴퓨터작동에 장애를 주는 행위의 요건으로 시스템 손괴, 부정데이터·프로그램입력등의 대표적인 사례와 기타의 방법으로 앞에서 밝

힌 바와 같이 전원을 절단하거나 온·습도등 컴퓨터 동작환경의 변경 및 파괴, 통신회선의 절단, 입출력장치 등 부속설비의 손괴, 기타 처리불능 데이터의 입력등 예상할 수 없는 지능적인 방해행위가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컴퓨터시스템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포괄적으로 모두 해당된다.

셋째 「행위의 결과로서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동작하도록 하여」에서 「사용목적」이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구체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당해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목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으로 또는 실험과정에서 컴퓨터의 기능자체로부터 도출되는 정보처리의 「일반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시스템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자가 의도하고 있는 「구체화된 목적」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동작」이라 함은, 예컨대 일정한 조건아래 일정한 제어등을 행하는 동작을 의미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동작」이라 함은 일정한 조건아래 목적에 맞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동작 즉 업무에 해가 되는 동작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입법적 과제

종래의 형법이론에서 업무방해죄(형법 341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의 범위가 사람이 처리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범죄에서 업무방해는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이외로 사람의 지령(명령)에 의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통한 「복수처리」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즉 정보네트워크 사회에서 온라인시스템에 관한 문제로서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그 피해정도도 대량화·대형화되고 있다.

또한 종래의 형법이론에서 처럼 「위계와 위력」이 직접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가하여지는 것」만을 대상으로 해석한다면, 컴퓨터범죄의 처벌에 한계를 갖게된다.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행하던 업무를 대신 행하는 경우가 많고, 인간이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는 시스템(무인시스템)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형법이나 다른 법률의 벌칙규정에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처벌하는 데 있어서의 적용대상·행위유형 등 구성요건은 구체적이고 명백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축소할수록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된다」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전통적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정보화사회에서 컴퓨터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서독·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컴퓨터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개정을 하루속히 마무리짓고, 적용대상 및 행위의 유형등에 관한 학설 및 법원의 판결례를 연구·추적함으로써 정보화·민주화사회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컴퓨터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개정을 하루속히
마무리짓고,
정보화·민주화사회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